

제325회 정례회

2013. 12. 10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2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3일

3. 제안이유

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목적으로 충청북도 내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, 제3조)

나. 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(안 제4조)

다.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임무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원인조사 시기, 현지조사,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
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
마. 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청, 경비지원(안 제10조, 제11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지진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충북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지진재해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지진예방정책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 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지진재해원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해 지역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